

고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4) 일본정부가 만약 배상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관한 국제법상 판단을 받기 위해 국제법상 권위있는 기구인 PCA에 의한 해결에 합의하여야 한다. 그 합의는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빨리 하여야 한다.

(5) 일본정부는 ICJ의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하며, PCA에 의한 해결이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로서 1인당 미화 4만불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

2.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1)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진상조사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하며 국내자료를 완전공개하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2) 한국정부는 65년 한일협정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전쟁범죄 등에 대한 형사책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3)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PCA에 의한 해결을 권고하여야 한다.

(4)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전후배상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도록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한국정부는 ICJ의 권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3. 국제연합에 대한 권고

우리들은 국제연합이 ICJ의 권고를 지지해 줄것을 요구한다.

중재합의서

일본정부 및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라고 함)가 대리하는 일본군 '위안부' 들(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함)은, 현재 정대협이 대리하는 피해자들 및 앞으로 정대협이 대리할 피해자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소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 당사자간의 분쟁을 이하의 조건하에서 [양 당사자간 중 한쪽이 국가인 당사자간의 분쟁의 중재를 위한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선택규칙](1993년 7월 제정)에 기초하여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에 위임하기로 합의하고, 본 중재합의는 이 합의 성립날에 발효하기로 한다.

1. [양 당사자간의 분쟁의 개요]

정대협 및 피해자들은 1990년 11월부터 전피해자를 위하여 서울에서 재한국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그리고 일본에서 직접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통하여, 또 일본정부가 출석한 UN인권회의에서 일본정부 대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대해 별지 1에 기재된 요구를 제안해 왔다.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내각관방장관(당시)이 1993년 8월 4일 일본에서 또 동년 동월 17일 제네바 UN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에서 별지 2의 성명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정대협 및 피해자들은 이 일본정부의 성명이 전기 요구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2. [중재의 대상]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의 유무 및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타의 피해회복 의무의 범위를 중재의 대상으로 한다.

3. [중재재판관의 수]

중재재판관의 수는 3명으로 한다.

4. [중재수속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재수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한다.

5. [중재재판관의 선임]

3명의 중재재판관의 선임에 관해서는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에 대하여, 선임권자의 선정을 위촉한다. 단, 중재재판관의 선임에는 한국 또는 일본의 국적을 갖는 자(이전에 이것을 유한자, 한국 또는 일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을 제외하는 것, 여성중재재판관을 1명 이상 선임할 것, 적어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중재재판 수속의 장소]

중재재판 수속은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소재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들의 진술, 기타 증거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중재재판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의 적절한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7. [준거법]

중재재판소는 준거법으로서 국제법 및 정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한다.

8. [비용부담]

피해자들에게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중재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는 일본정부의 부담으로 하고, 동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상설중재재판소 국제사무국의 지시에 따르며, 전액 일본정부가 지태없이 납부하기로 한다. 중재수속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당사자 지출에 드는 비용의 최종적 부담에 관해서는 중재재판소가 중재판단에 의해 결정한다. 단, 정대협 및 피해자들 측에는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중재를 위해 필요로 한 비용 및 일본정부가 중재수속에 지출한 비용에 관해서는 이들에게 지불을 명령하지 않기로 한다.

9. [면책사유의 포기]

이 합의에 의해, 합의에 기초해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의해 실행되는 어떠한 중재재판의 집행에 관해서도, 또한 이 합의가 없으면 당사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권국가로서의 면책을 주장, 실시하는 어떤 권리도 포기된 것으로 한다.

10. [당사자의 대리]

이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수속에서는 정대협이 피해자들(장래 정대협이 대리할 피해자를 포함)을 대리한다.

11. [조기해결의 협력]

양 당사자는 피해자들이 고령인 것을 고려하여 중재재판소가 되도록 조기(이 중재합의 성립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재판결을 인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다.

1994년 월 일

일본정부대표 (수상 또는 외무대신)

피해자들 대리인

유현석 변호사 외 36인 한국변호사
스즈끼 히로시 변호사 외 67인 일본변호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효재
공동대표 윤정옥
공동대표 김희원

피해자들

강덕경 김복동 김순덕 김은혜
문필기 박옥련 손판임 윤두이
윤순만 이영숙 이용녀

정대협 및 피해자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의 개요

정대협 및 피해자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의 조치
- 2) 일본정부에 의한 사설관계의 공적승인 및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에 법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에 관한 공적 승인
- 3) 그것을 전제로 한 적절한 사죄조치
- 4) 이것들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 등의 손해를 회복하는 조치의 일부로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직접 및 완전·충분한 손해배상의 지불.
- 5)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것을 기원하기 위한 추도비 건설 등의 조치
- 6)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제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이 기재되도록 하는 조치
- 7)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가해범죄행위에 관한 책임자의 적절한 처벌조치
(이것은 1993년 1월에 부가되었다.)

종군위안부의 국제법적 해결

일본 정부가 책임과 배상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8일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와 '국제중재재판소 제소·한·일 변호인단'이 주최한 세미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개인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보상한계 그리고 보상내역과 구체적인 보상금액 등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채택된 선언문은 일본이 전쟁중 위안부 제도라고 하는 국제 법상 잔인하고도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국제 법적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되도록 일본이 이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왔고, 작년 일본 정부가 국가와 군의 부분적 개입과 강제성을 시인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제법상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 배상책임과 별도로 전쟁범죄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피해자가 전후 50년이 되도록 계속 당해온 신체적·인격적·재산적 손해를 모두 감안한 보상 책임 등에 관해서도 이 국제중재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선언문은 국제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 이전에 임시조치로서 한 사람당 미화 4만달러의 생계보조비를 당장 지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90년대 들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나 일본 정부가 부분적으로 나마 개입을 시인한 것은 지난해 8월의 제2차 진상조사 발표 때다. 그러나 '물질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선언적 발언이 나온 이후 진상조사가 유아무이되어온 실정이다. 또한 일본은 새삼스레 65년의 한·일 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 배상책임은 종결되었다는 주장을 폐고 있다. 그러나 이 세미나에서는 한국 정부가 65년에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에 불과하며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이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위안부 개인에 의한 국제법상의 소송은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일 협정으로 배상의무는 소멸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국제법상 가장 권위있는 기구인 중재재판소의 판단과 해결방안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민간인들이 위안부 문제를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앞서, 정부 차원의 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 자료의 공개를 통한 자체 진상조사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할 책임이 있다.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신대 개인배상청구권 유효"

한·일 변호인단 공동선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중재재판소 제소를 위한 한·일변호인단'(대표 유현석 변호사)은 28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지난 65년 한일협정은 정신대의 개인배상 문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일본정부는 더 이상 배상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20면
이들은 또 "일본군 위안부는 국제법상 부녀매매금지조약,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등을 위반한 명백한 비인도적 인권침해행위"이며 "일본정부는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전이라도 피해자들에 대해 개인당 4만달러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성봉 기자

□ '위안부 해결' 세미나 일본 발표자 도쓰카 변호사

"일본만행 국제중재재판소 제소해야"

하성봉 기자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신대에 대한 배상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8일 열릴 예정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한 세미나'에서 일본쪽 발표자로 방한한 일본인 변호사·도쓰카 에쓰토(52·일본변호사연맹 해외조사연구특별위원).

그는 일본인이면서 한국 정신대의 피해배상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발벗고 뛰는 몇 안되는 일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연히 국제인권문제에 관심을 쏟아 지난 92년 일본에서 정신대문제가 여론화된 뒤부터 이에 다른 일은 접어둔 체 이 일에 매달려 있는 상태다.



"유일한 해결책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해 국제법적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정신대 피해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일본 정부가 배상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여론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게 그의 일관된 지론이다. 그는 최근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정신대 개인보상청구는 한·일 협정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산파' 구실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배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피해자들의 노력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본인 남자로서 선조들의 만행에 자괴심을 느껴 정신대문제를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는 "앞으로 일본 정치인을 차례로 만나 정신대문제의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신대 한·일변호인단 구성

97명 규모...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 추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97명 규모의 한·일변호인단이 구성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유현석 변호사 등 국내 변호사 37명과 도쓰카 에쓰토 등 일본 쪽 변호사 60명으로 '정신대문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추진 한·일변호인단'(가칭)을 구성하고 한국 정신대 문제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법적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일변호인단은 이와 함께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정신대 배상의 법적 문제 △배상수 및 근거 △향후 활동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성봉 기자

□ 위안부문제 국제법적 해결 세미나

"개인배상청구권 국가 거부못해"

하성봉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한 세미나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국제중재재판소 제소를 위한 한·일변호인단'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정신대문제의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필요성과 대책 및 전망에 대해 현실성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한일협정과 개인배상청구권(배금자)=65년 한일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종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협정내용에 전쟁범죄에 대해 민·형사책임은 언급조차 없었다. 또 국제법상 개인배상청구권은 국가가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중재재판소 제소의 유효성(아이타니 구니오·도쓰카 에쓰로)=일본 재판소는 위안부 문제에 의욕이 없으며, 승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지난 9월, 배상기금법안이 마련됐으나 입



법화는 이미 때가 늦었다. 최근 발표된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국제적인 1심판결'이다. 이 보고서에 따라 일본은 '국제법적' 책임이 생겼다. 앞으로 일본정부의 인권침해 등 법적 논쟁을 활발하게 이끌어야 한다. 국제중재 요구는 일본쪽 반론을 봉쇄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 일본에서의 지원활동과 전망(이시카와 이쓰코·오자키 준리)=중재재판소 제소를 위해 일본내 40개 사회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의원들에 대한 로비활

동과 서명운동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정부에 최종보고서의 수용을 촉구했다. 일본정부의 동의가 문제다. 국제여론과 한국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 정신대 희생자에 대한 배상(박원순)=지난 53년 독일 연방법상법에 따를 경우 체포, 감금, 연속된 강간, 가족들의 고통, 자유의 상실, 육체·건강상 부상, 손해, 성적 노역에 대한 보수 및 모든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이 배상범주에 포함돼야 한다.

『 위안부 本末 五十年 』

일본이 모르는 전쟁책임

일본군·위안부·강제노동조약 위반

도초카 에츠로 번역자

들어가는 말

위안부문제로 국제友和회 등 NGO는 일본을 비난하는 국제법위반의 원凶를 범했다. 현재의 일본정부는 그 책임을 서인부에게 끌어당긴다.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노예제 및 노예거래의 금지에 위반한다. 2) 주입관제 조약에 위반한다. 1) 및 2)는 국제관습법의 위반이며 3) 및 4)는 일본이 비준한 조약에 대한 위반이다. NGO는 이러한 국제법의 原則에 기초하여 일본이 국제 법상의 국가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부 록(PCA및 정대협 활동자료)

1. 「위안부」와 강제노동조약 위반(도초카 에츠로) 64
2. 왜 지금 PCA에 갈 수밖에 없는가?(지은희) 77
3. PCA제소를 위한 정대협의 활동과정과 과제(윤미향) 82
4. 불처벌에 대한 배상 판례 / 제인스 사건에는 불평이 있다. 91
5. 연립여당내 전후 50주년문제 프로젝트 위원회의 민간위로기금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지은희) 94
6. UN에서 여성인권운동으로 재기된 일본군「위안부」문제(윤미향) 99

그러나, 관습법이 법원으로서 국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영미법권과는 달리, 일본은 성문법 충실투의 원칙으로 성문법화된 조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강제노동조약과 같이 조약의 명문규정에 정해진 국제법상의 책무위반들이 이해되기가 쉬운것 같다. 여기서는 1930년의 ILO(국제노동기구) 제 29호 강제노동조약위반 문제를 들어보자. 일본이 이것을 비준, 등록한 것은 1932년 11월 21일(조약 10호)이며, 이것이 일본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 것은

(로마숫자 표기) 제 10장 노동조약 위반

- 46 (로마제국) 베유 19조 공포 당시 '오부인우' .
47 (로마제국) 1931년 10월 수출 ILO CAPI 품목 2
48 (로마제국) 노동자 죄수로 일하는 경우 소련 ILO CAPI
49 (로마제국) 스위스 1931년 10월 수출 ILO CAPI
50 (로마제국) 1931년 10월 수출 ILO CAPI
51 (로마제국) 1931년 10월 수출 ILO CAPI
52 (로마제국) 1931년 10월 수출 ILO CAPI
53 (로마제국) 1931년 10월 수출 ILO CAPI

일본이 모르는 전쟁책임

일본군 '위안부' 와 강제노동조약 위반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

들어가는 말

위안부문제로 국제友和회 등 NGO는 '일본제국군 정부는 국제법위반의 범죄를 범했다. 현재의 일본정부는 그 책임을 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인도에 대한 죄를 구성한다. 2) 노예제 및 노예거래의 금지에 위반한다. 3) 강제노동조약에 위반한다. 4) 추업관계 3조약에 위반한다. 1) 및 2)는 국제관습법의 위반이며 3) 및 4)는 일본이 비준한 조약에 대한 위반이다. NGO는 이러한 국제법의 法源에 기초하여 일본이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국제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준수를 정하는 현행 일본국 헌법 제 98조 제 2항의 하에 있어서와 같이, 전전에도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었던 것에는 틀림이 없다. 국제관습법과 이미 비준한 조약은 일본을 구속한다는 점, 그리고 국제법은 국내입법조치가 없어도 일본법 체계에 포함되는 점에서 국제법에 관한 헌법제도상의 해석은 戰前도 戰後도 적용된다. 그리고 국제관습법상의 책무와 조약상의 책무를 위반을 했을 때도 국가의 책임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관습법이 법원으로서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영미법권과는 달리, 일본은 성문법 중심주의의 입으로 성문법화된 조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강제노동조약과 같이 조약의 명문규정에 정해진 국제법상의 책무위반쪽이 이해되기가 쉬운 것 같다. 여기서는 1930년의 ILO(국제노동기구) 제 29호 강제노동조약위반 문제를 들어보자. 일본이 이것을 비준, 등록한 것은 1932년 11월 21일(조약 10호)이며, 이것이 일본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 것은

1933년 11월 21일이다. 체명국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간, 조약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후는 ILO사무국장에게 폐기를 통고해도 그 등록일로부터 1년 간은 폐기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제 30조 제 1항) 그 후는 5년마다 폐기의 등록을 할 수 있다.(동조 제 2항) 가령, 일본이 효력발생부터 10년을 경과한 직후인 1943년 12월에 조약 폐기의 등록을 했다고 해도 1944년 11월까지는 이 조약에 구속된다. 그러므로 제 2차 대전중의 대부분의 기간은 조약폐기로 의해 조약상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이 조약의 폐기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본은 효력발생시인 1933년 11월 21일 이후 오늘까지 이 조약에 구속되어 온 것이다. 이 조약은 거의 모든 위안부가 피해를 입은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제기의 경과와 문제점

필자는 국제교육개발(IED)를 대표하여 1992년 2월 UN인권위원회에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발언했다. 당시는 일본의 소송상의 주장은 참고로 했으나, 상기 4점 중 [인도에 대한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 이외의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는 일본의 소송에서의 국제법상의 주장은 아직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NGO도 전혀 이 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있지 않았다. 국제법상의 연구가 진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끝난 일이며 법률상 일본정부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 정부측의 선전만은 침투하고 있었다. 한탄스러운 것은 일반 시민은 물론 정치가, 법률가, 보도관계자 사이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정설과 같이 되어 있었다. 정치적 선전만으로 법적 문제가 결착되어 있는 것 같은 세론화가 된 것에 그후 이 문제가 크게 비뚤어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고 법적 연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1992년 5월, UN 현대노예제부회에서 필자는 IED를 대표하여 ‘위안부’, 강제연행문제에 관해 노예제의 금지 및 강제노동조약상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근거로 일본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국제법상의 책임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노동조약 위반의 근거로서 IED가 든 것은 다음의 두가지이다. 첫째로

동조약 제 1조 및 제 11조가 여성의 강제노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여성에 [종군위안]을 강제했다. 둘째로 강제노동은 ‘건강한 성년남자’(18세 미만 45세 이하)에 한할 것(제 11조), 년간 60일 이내에 한정되어 있는 것(제 12조),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할 것(제 14조), 지하노동은 금지할 것(제 21조), 기업 등 사인에게 강제노동을 허락할 수 없는 것(제 4조) 등의 엄한 조건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조건에 위반하여 조선인 강제연행이 행해졌다.

또 체맹국은 일절의 강제노동을 되도록 최단 기간내에 폐지하는 의무(제1조 제1항), 폐지에 이르는 과도적 기간중 예외적으로 상기와 같은 엄격한 조건을 준수하는 의무(동조 제2항), 강제노동의 불법인 강요를 형사범죄로서 처벌하는 의무, 그를 위한 입법의무, 엄격한 처벌실시의무(동조 25조)를 지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UN에서는 전혀 답변하여 오지 않았다. 또 최근 국회에 반론을 한 것에 대해 나중에 언급한다. UN현대노예제부회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동 부회는 위안부문제에 관련하여 UN차별방지, 소수자 보호소위원회의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의 배상 등에 대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자에게 이 정보를 송부하는 것은 每日新聞(1992년 5월 14일 석간일면, 이또 요시아끼 특파원)에 의해 ‘구일본군의 종군위안부문제, UN이 처음으로 조사로, 특별보고관에게 정보제공’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주간 법률신문 및 법학 세미나 상의 연재 참조) 이외에는 예외적으로 젊은 국제법학자에 의한 논문(아베 히로비, 군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법학 세미나 1993년 10월호 63페이지)가 공표되었지만 그 외에는 연구가 진전되어 있지 않다. 또 UN NGO, 변호사회, 국내 시민단체의 활동도 미약했다. ILO에 대한 통보권을 갖는 노동단체에 의한 이 면에서의 활동도 진전하지 않았다.

그 후 동 조약 위반의 주장상 장해가 되는 문제점이 두가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첫째는 변호사 등 법률가에서의 의문이다. ‘종군위안’(성적 착취를 받고 일본병사의 성적욕구의 배출구의 상대방으로 된 것)의 행위가 강제노동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일본변호사 등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이 조약상 ‘강제노동’이란, ‘어떤 자가 처벌의 협위 하에서 강요되고 또 이 자가 스스로 임의로 자진한 것이 아닌 일절의 노무’라

고 정의되고 있다(제 2조 제 1항).

조선여성 등이 '종군위안'을 강제당한 것 및 이것이 피해자의 임의의 행위가 아니었던 것은 일본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서 쟁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동조의 '노무'(Work or Service)에 해당하는가라는 근본적 문제에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필자가 받은 질문은 '이 종류의 사례가 강제노동조약 위반으로서 국제적 공적 기관에 의해 취급되어진 선례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고한 회답을 할 수 없었다. 여기에 필자의 주장의 최대의 약점이 있었다.

둘째 의문은 임의의 매춘을 포함하여 매매춘의 폐절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제기되었다. "가령 매춘을 강제노동조약상의 노무라고 한 경우, 강제된 매춘은 조약위반으로서 비합법이 된다고 해도, 반대해석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는 임의의 매춘은 비합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매춘의 합법화에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매춘을 강제노동조약상의 노무라고 인정하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위안부에 대한 배상 등에 대해 필자와 같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일본정부측에서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었다.

선례입수의 경과

다행히도 이들 의문을 푸는 계기가 생겼다. ILO 전문가 위원회의 위원 P.N. 바그와디 판사에서 열쇄가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동 판사는 전 인도 최고재판소 장관이며, 상설중재재판소 판사, 국제인권(자유권) 규약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국제적으로도 이름 높은 법률가이다. ILO 전문가위원회(위원20명)은 강제노동조약 등 ILO관계조약의 실시상황을 감시하는 ILO의 중요기관이다.

필자는 이미 동 판사와 만면이 있었다. 이전에 정신병자의 노동상의 차별과 인권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다. 동 판사는 1993년 6월 빈 세계인권회의에서는 NGO포럼 중 최대의 규모였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국제법 정의 재판관역을 담당하고 '위안부' 피해자들로 부터 직접 증언을 청취한 적도

있다. 그 때 동 법정을 방청한 필자는 위안부 등의 증언이 실린 국제공청회 영문기록을 동 판사에 제출했다.

금년 2월, UN인권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제네바에 체재하고 있었던 필자는 동 판사와 재회했다. 동 판사는 ILO 전문가위원회(2월 10-25일)에 출석중이었다. 필자는 솔직하게 상기의 의문을 털어놓았다. 동 판사는 'ILO전문가위원회는 강제매춘에 강제노동조약을 처음으로 적용한 곳이다.'라고 명쾌하게 대답했다. 필자의 주장의 최대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동 위원회의 보고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여진 자료를 입수할 수는 없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선례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받아도 필자는 "바그와디 판사가 'ILO 전문가위원회가 적용했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납득을 얻을 수 없다. 연구를 열심히 하고 사정에 통한 법률가이면 일수록 납득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연할 것이다. 필자의 얘기는 '들은 얘기'의 증거에 지나지 않다. '서면이 된 증거를 갖고싶다'라고 한다. 더 상세한 질문에 대답할려면 IOL전문가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다. 국련 기관의 전문위원 등 국제적 권위자는 모두 매우 바쁘다. 그 초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몇번이나 이 문제에 관해 활동해 온 필자는 알고 있다. 고민은 지워지지 않았다.

금년 8월에 또 행운이 있었다. 필자는 국련인권소위원회를 위해 제네바에 체제중이었는데, 바그와디 판사와 재회할 수 있었고 보고서가 공표된 것을 알았다. 제네바의 ILO사무국을 방문하여 1994년 2월에 개최된 ILO전문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재된 문제의 선례부분(Report III(Part 4a):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Recommendations, General report and observations concerning particular countrie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1st Session 1994,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pages 28 and 139.)를 입수할 수 있었다.

바그와디 판사와 함께 하는 도쿄 세미나의 개최

바그와디 판사는 9월 하순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초청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일본에 들러서 관계자에게 설명해주겠다는 아주 호의적인 대응을 해 주었다. 시간적 여유가 한달밖에 없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의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급하게 제네바에서 일본의 관계자에게 연락했다. 국제인권연구회, 일본변호사연합회, 조선인강제연행 지상조사단의 3 단체가 바그와디 판사를 초청하고 9월 23일 24일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준비과정에서 걱정스러운 사건도 생겼다. 바쁜 바그와디 판사가 서울행을 갑자기 취소한 것이다. 그래서 도쿄 세미나의 기획이 없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다행히 바그와디 판사는 도쿄세미나를 위한 방일의 약속을 지켜주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방일해준 판사에 감사함과 함께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획을 실현해준 3단체의 관계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세가지 세미나 중 두개는 공개되지 않았다. 9월 23일 오후, 총평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제인권연구회 주최의 세미나 [‘위안부’, 강제연행과 ILO 29호 조약(국제법과 강제노동)]은, 일반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개요를 보고하자. 이 세미나에 관해서는 [‘종군위안’은 강제노동, 국제배상에 파급? ILO 전문위원 내일 보고] (내일신문, 1994년 9월 22일 조간) 등 (The Japan Times<by Naomi Hirakawa>, “SEXUAL SLAVERY DEFIED CONVENTION, ILO on option for ‘comfort women’, 25 September 1994”; 매일신문‘강제노동과 정부대응을 요구 함, 도쿄에서 위안부연구회’(1994년 9월 24일 석간, 동아일보 등 한국각지)도 크게 보도했음으로 이 세미나 개최의 사실을 잘 알려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미나는 국제인권연구회 사무국장, 기다무라 데추오 참의원 의원이 사회를 맡고 동회장 모토오카 쇼지 참의원 의원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필자가 바그와디 판사를 소개한 후 동 판사의 강연을 들었다.(통역 필자) 출석자는 노동조합관계자, 시민단체 대표자, 법률가, 기자 등이며 회의장은 만석이었다. 국제법분야에서도 고도로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내용이 강연이었지만, 출석자는 매우 열심이었고 적절한 질문도 나왔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바그와디 판사의 인식

선술한 바와 같이 바그와디 판사는 위안부 피해자로 부터 직접 증언을 청취

하고 관계문헌에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강연의 모두에서 그 일단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 것은 생략하고, 인상에 남은 몇가지 점만을 보고하겠다.

동 판사는 ‘종군위안부’ 사건은 ‘가장 중대한 인간의 수욕의 발로’이며 ‘일본 민족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한다. 또 이것은 개인이 범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국가의 행산조직적, 집단적으로 무력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동 판사는 연합국이 이 사건을 알면서도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개발도상국의 인권침해를 엄격하게 비판하는 서구 제국이 최근까지 이 문제에 침묵해 온 것은 그것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서구제국의 이익’과 무연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위에서 멀지 않아 공표된 예정인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상세한 것을 양보했다.

또 동판사는 8월 말에 공표된 ‘위안부’ 문제에 관한 무라야마 수상 담화에 언급하여 정부에 의한 기금안은 ‘정부개발원조’이며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 구상은 정부에 의한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직접 피해자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에 강제노동 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일본정부를 비난하는 근거로서, 동 판사가 든 것은 강제노동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다. 강연은 ILO와 강제노동조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동 판사는 1994년 필라델피아 ILO회의는 ‘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하고, 이것은 ILO현장의 부속문서가 되어 있고, 동 선언은 인권의 존중을 ILO의 원칙의 하나로서 공식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1926년에 채택된 노예조약은 이미 강제노동을 시야에 넣고 있다. 1930년 6월 28일 강제노동에 관한 ILO 29호 조약이 채택되었다.

동 판사는 문제의 동 조약 제 2조의 ‘강제노동’의 정의를 들어 ‘종군위안’은 동 조가 규정하는 ‘어떤 자가 처벌의 위협하에 강요되어 또 이 자가 스스로 임의로 나선 것이 아닌 일절의 노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서 동 판사가 든 이유를 열거해 보자. 첫째로 ‘성교는 위안부가 가령 이것을 거절하

면 군사적 보복을 받는다는 협박 또는 위협하에서 바로 강요되었다.' '사실, 피해자는 물리적으로 강제되었다.' 둘째로 '강제매춘은 강제노동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문제의 문언은 [강제된 노동(forced work)]뿐만 아니라 [강제된 역무(forced service)]도 포함하고 있다'(주의해야 할 것은 영문 제 22조 중의 문언이 "all work or service" 직역하면 '모든 노동 또는 역무'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일본어역 제 2조 중의 문언은 '노무'라는 말로 본역되어 있는 점이다. 동 판사는 영문 문언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

셋째로, 실제 ILO전문가위원회는 최근 매춘 및 포르노를 위한 어린이의 착취는 제 29호 조약에 위반하는 어린이의 강제노동을 구성한다는 견해를 채용했다고 하여 전기 1994년 동 위원회 보고서의 다음과 같은 해당부분(P. 28, 89-90 단락, '1930년(제 29호) 강제노동조약의 적용'이라는 부분을 참조)를 선례로서 인용했다.

[89. 금년, 위원회는 이 조약의 적용에 관해서 광범위한 많은 보고를 심사했다. 많은 체맹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조약의 위반인 착취와 그 결과로서의 비참한 피해는 중대한 염려해야 할 사항이다. 위원회가 강한 불안을 품고 있는 점의 하나는 어린이의 강제노동 특히 매춘 및 포르노를 위한 어린이의 착취이다. 어린이의 노동의 이 형태는 그것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의 밖에서 이전보다 더 선전되고 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그 외의 나라이 부터의 여행자나 방문자에 의한 교묘하고 중대한 착취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러한 어린이 착취는 이미 그것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제적 책임이다.

90. 위원회는 아직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체맹국에 대해, 이러한 개탄한 만한 관행의 폐절을 지원하기 위해 각 나라의 영역내에서 그 영역내의 자의 관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타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선전하고 또는 촉진하는자,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타국을 여행하는자의 처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보완적 조치는 이러한 어린이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 자신이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고 모든 관여자를 소추해야 하는 동 국의 책임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 문제로 금년 직접 문제가 된 나라는 태국이다.(전기보고서 139페이지 '어린이의 성적 착취'의 항 참조).

동 판사가 든 상기의 이유는 상기 ILO 전문가 위원회의 여성(소녀)의 매춘을

위한 착취의 선례를 포함하므로 극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전기한 필자의 주장의 약점은 극복되었다. 또 '위안부' 문제에서 떠나지만 오늘의 태국에 있어서의 매춘과 포르노를 위한 어린이 착취에 관한 상기 ILO의 지적은 일본을 포함한 강제노동조약 체맹국인 모든 나라에,(보완적이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ILO견해는 일본을 포함하여 태국이외의 나라에 대해 그 영역내에서 이것에 관여하는 자에 관하여 강제노동조약상의 의무로서 처벌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지금까지 잊혀져 온 중요한 현대적 문제이다.

또 전기한 [강제매춘에 관해서 강제노동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임의의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에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동 판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임의의 매춘의 문제는 다른 법에 의해 비합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없다]고 명쾌하게 대답하여 이 문제에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였다.

'위안부'와 강제노동조약 적용 제외 규정의 문제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유엔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일절 반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의 질문(1994년 6월 22일 시미즈 스미꼬 참의원 의원)에게, 전시이므로 강제노동조약의 적용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동 조약 제 2조 제 2항은 [본 조약에 있어서 '강제노동'이라 칭하는 것은 左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d)는 '긴급한 경우'의 하나로서 '화재' '홍수' '기근' 등의 '재앙' 이외에 '전쟁의 경우'까지도 예시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질문을 받은 동 판사는 '위안부'의 경우는 이 조문을 사용하여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법적 근거의 하나로서 동 판사가 든 것은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이다. 동 판사는 전쟁의 경우라도 강제되는 노동과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정=전쟁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전쟁과 병사의 '성적 위안'의 필요성의 사이에는 명백히 비례하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동 판사는 전전의 조약을 해석하는 위에서도 이러한 해석상의 원칙은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동 판사는 '시라고 원칙'을 든다.

'시라그 원칙'은 1987년 국제법률가협회의 사무총장(당시) 닐. 마그다모드 변호사(바리스타)에 의해 일본에 소개되어 있다(닐. 마그다모드, 도츠카 에츠로역 [국제규약과 장애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각국의 책무] '법학 세미나 중간, 앞으론의 정신의료' (일본평론사, 1987), p. 266-275 참조, 원칙 영문은 같은 책 p. 276-279). 국제조약에는 조약의 적용제외(derogation)나 보호되어야 할 권리(제한하는 것과 같은 규정 limitation clauses)가 정해질 때가 있다. 그 해석에 따라서는 모처럼의 권리보장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중대하다. 그 경우에 어떠한 원칙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국제법률가협회는 1984년 시라그사에서 국제인권(자유권)규약의 제한규정의 해석원칙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거기서 채택된 것이 이 '시라그사 원칙'이며, 유엔에서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UN Doc. E/cn.4/1984/4.). 그 속에 등판사가 지적하는 '비례의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시라그사 원칙'은 동 규약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조약을 포함하는 모든 인권조약의 해석의 원칙으로서도 준용될 것이다. 동 원칙 제 10조, 제 11조에 의해 인정하면 권리제한 규정의 해석상 '비례의 원칙'은 '제한이 당해 조문에 의해 인정된 제한을 정당화 하는 제 근거의 하나에 기초하는 것이며, 정당한 목적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그 목적에 비례한 것이다.' '제한을 적용할 때 국가는 제한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필요로 되는 이상의 더 규제의 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또 '어떤 제한도 자의적인 방법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동 원칙 제 7조)며 '보장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 하는 것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동 원칙 제 12조)고 되어 있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강제노동조약 제 2조 제 2항은 '전쟁의 경우'를 '긴급의 경우'의 예시로서 들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정부에는 '종군위안'의 강제노동이 왜 필요했는가, 그 정도의 '긴급한 경우'가 있었는가, 그것을 위한 필요성, 긴급성을 입증하는 책임이 있다. 그들 간에 비례의 관계가 있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단지 '전시였다'고 함으로써 적용제외를 받을 수는 없다.

필자는 유엔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귀납법적 논리로 다른 각도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는 주장을 하였다. 이것도 바드와디 판사의 논리와 공통하는

부분이 있다. 필자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혹시 일본정부의 주장이 맞는다고 가정해 보고, 불합리한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 가정(즉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전쟁의 경우'의 항변이 맞다고 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전쟁의 경우' 이므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강제노동조약의 적용이 없고 어떤 강제노동도 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일단 이 가정이 맞는 것으로 하자.

첫째로 의문이 되는 것은 ['사변' 등의 군사행동은 '전쟁의 경우'에 들어가는가]라는 것이다. 이것을 제외해 버리면 만주사변, 일지사변 등으로는 강제노동조약의 적용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주장의 진의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지금까지 '전쟁'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군사행동을 취하고 있었을 때에는 '전쟁의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일본제국이 강제노동조약을 비준한 후, 군사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비준한 후, 계속 항상적으로 강제노동조약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된다. 그것으로는 동 조약의 비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것은 불합리한 결론이다.

둘째로, 적용제외가 인정되어 있는 것은 '긴급한 경우'이며, 단순히 '전쟁의 경우'가 되지 않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라는 것은 이 말의 평소의 의미 해석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강제노동을 어찌해도 필요로 하는 긴급한 사정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긴급한 경우'는 군사행동을 취하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령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전쟁의 경우' 즉 '군사행동에 종사하고 있는 때는 일본제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모든 영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무조건으로 동 조약의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사고를 진행시키면 이 가정이 극히 불합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의 경우'는 '긴급한 경우'의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혹시 일본정부의 상기 논법('예시의 사정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강제노동도 합법화된다'는 것)이 맞는다면 다른 예시의 경우, 예를 들어 '재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제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모든 영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동 조약의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예시의 경우인 '재앙의 경우'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명렬한 유행병' 등의 경우도 무조건으로 동 조약의 적용제외를 인정해야 하게 된다. 일본정부의 주장이 옳다면 '일본의 관할 범위내의 어딘가에서 이러한 재앙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도 어떤 강제노동도 무조건 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 된다. 일본에서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유행병 등의 재앙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 이 정식이 옳다면 예를 들어 '북해도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조선의 소녀를 '위안부'로 연행해도 좋다'라는 결론도 옳은 것이 된다. 이것이 아주 불합리한 결론인 것은 일본정부라 하더라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전기한 최초의 가정이 틀렸기 때문이다. 즉 '전쟁의 경우'이니까라는 것만의 이유('만주에서 일본제국군이 군사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라든지 '진주만을 일본제국군이 공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 조약의 적용제외를 할 수 있고 어디서(즉 조선에서도), 언제(만주사변으로부터 제 2차 세계대전 종료까지), 어떤 강제노동이라도 (여성, 소녀에게 '종군위안'을 강요하는 것)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정당화 하는 것이 못된다.

ILO의 감독, 불복신청수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동 판사는 ILO의 충실했던 감독, 불복신청 수속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위원회 및 국제노동총회, 삼자구성위원회에 의한 고도로 발달된 감독 수속 및 이것을 보완하는 더 고도한 불복신청 수속(현장 24조 및 26조)를 설명했다. 가맹국 정부, 가맹국 소재의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 단체는 타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의 송부나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유엔 NGO라 하더라도 통보를 보낼 권리는 없다.

앞으로의 전망

선헤가 발견된 것으로 인해 '위안부' 문제와 강제노동조약의 문제에 대해 보다 깊히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널리 이해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강제노동조

약 위반의 문제는 '위안부' 문제 뿐만 아니라 강제연행문제에도 이어지는 중요한 것이다. 바그와디 판사와 함께 한 획기적인 세미나가 실현된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것을 환영하고 싶다. 앞으로는 NGO, 변호사, 시민단체, 국제법학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ILO에는 고도의 감독, 불복신청수속이 있다. 그것은 강점이다. 그러나 NGO에는 그 접촉권이 없다. 앞으로 ILO에 통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각국의 노조가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가가 주목된다.

왜 지금 PCA에 갈 수밖에 없는가?*

지은희(정대협 PCA준비위원장)

우리는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일본정부에게 국제중재재판소에 가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일본정부에게 양심이 있다면 PCA의 판결을 요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소녀들을 대량으로 성노예로 삼은 일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임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정부 자신도 스스로 발표한 2차 보고서에서 소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는데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범죄행위와 이에 대한 책임을 세계에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PCA에 가져가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일본정부가 정대협 운동의 4대 요구인 진상규명, 사죄, 책임자 처벌, 배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가를 봅시다.

13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어린소녀들 15만에서 20만명을 강제로 혹은 속여서 끌어다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을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통제했던 일본정부가 이 범죄행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밝히고 사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대협 운동을 시작한 지 4년이 넘는 현재까지 일본정부가 우리는 도대체 몇 명의 소녀들을 데려다가 노예생활을 시켰는지? 그리고 패전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사실전반을 일본정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94년 9월 15일, 동경에서 PCA연락회 주최로 열린 「PCA를 성공시키기 위한 집회」 강연원고입니다.

더구나 일본의 민간학자에 의해서 군‘위안부’ 정책의 입안자와 명령계통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규명하고 법적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정부는 비겁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지 60년이상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역사속에 은폐되어 있었고 특히 일본정부는 93년 8월 4일까지도 정부의 관여를 부정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당시에는 군‘위안부’의 존재자체를 부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이 나오고 연구자에 의해 정부자체가 군‘위안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주도했다는 구체적 자료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사실에 밀려 어쩔수 없이 정부의 관여와 강제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소위원회의 요구도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65년 한일기본조약을 이유로 개인배상도 거부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일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추악함을 아직도 바로보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의 미비를 핑계삼아 혹은 과거의 협정을 이유로 기술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일본이 아시아에서 진정 새롭게 태어나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에게 몇번이라도 무릅뚫고 사죄하면서 스스로 배상해야 할 일입니다. 그 길만이 일본 스스로도 과거 군국주의의 잔재를 정리하면서 세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사회로 새롭게 태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역사속에 되풀이되지 않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바로잡고 일본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이유는 현재 일본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관여의 민간위로금안은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이중의 모욕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은 위로금이 아니라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은 일본정부의 범죄성을 밝힘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갈기갈기 찢기운 개인의 존엄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찾아낸 중국무한에 버려졌던 한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중국 무한지역에는 일본이 패전후 버리고 간 조선의 '위안부'들이 3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살하거나 사망하고 현재 9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 9명의 할머니들중 15세에 끌려가 8년 동안의 성노예생활끝에 그 곳에 버려져서 회환의 삶을 살고 있는 흥아무개 할머니는 이렇게 중언했습니다. "하도 어려서 성숙을 못한 상태에서 성노예생활을 하기위해 국부를 강제로 절개당했고 아직도 그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위안소에는 10여명의 조선 여자들이 있었는데, 한달에 한명씩 전쟁터와 인접해 있는 인근 부대로 가서 성노예가 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나 만신창이로 짓이겨진 몸을 이끌고 달구지를 타도 위안소로 돌아오면, 또 다른 위안부가 교대를 하고..... 이루 말할수 없죠. 그런 몹쓸짓을 당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버려진 삶과 이 할머니를 유린했던 일본군인들의 인간적 존엄성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 모두가 역사의 피해자임이 밝혀지고 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던 책임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며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간위로금안을 제출했던 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인 할머니들은 절박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거나 병들어 계시므로 우선 국민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당한 일이라고 또는 나의 딸의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존엄성의 회복입니다. 할머니들은 민간인이 동정심에서 모금한 위로금을 받고서

는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시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고 정당한 배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일왕이 혹은 수상이 의례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하는 '통석의 염'이니 '진사드린다'느니 하는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국회에서 결의한 공식적 사죄와 피해자 개개인에게 사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배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책임을 민간에게 떠 넘기려는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일본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며 이런 범죄가 인류역사상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데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조사했던 국제법률가협회(ICJ)의 권고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첫째, 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행정적 기구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전적으로 희생자들을 원상회복(의료혜택, 주거 및 재활의 조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완전배상)할 조처를 취할 것. 세째, 일본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회 등의 기구를 만들 것.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그들의 권리나 주장에 손상시킬 없이 각 피해자에게 미화 \$40,000.^{oo} 정도를 긴급지급할 것과 연합군의 가맹국들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 입니다. 우리들은 피해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모아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고 정부책임하에 배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PCA에 가서 국제법의 기준하에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개인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명백히 하자고 요구합니다. 범죄의 성격상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하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지금까지는 제소할 의사가 없으므로 차선의 방법으로 PCA의 객관적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보상문제는 끝났다는 구차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배상의 문제를 국제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받고자하는 저희들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일본이 국제법적 판단을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PCA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들은 일본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도록 함께 연대해서 강력히 요구합시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PCA 제소를 위한 정대협의 활동과정과 과제*

윤 미 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시작하는 말

정대협의 활동이 시작된지 1994년 11월 16일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의 문제, 민족의 문제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아시아피해국들과의 연대운동과정에서,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연대운동과정에서 인권문제로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세계여론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대한 인권침해의 문제요, 전쟁 중에 일어난 국가조직에 의한 여성의 성노예 사건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불이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정부에게 진상규명과 국회결의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교과서 기록과 교육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 국제민간단체와의 연대, 아시아연대 등의 국제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일본활동으로 일본민간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 등을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대국회 활동으로는 일본국회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회에서 정부의 사죄, 배상을 결의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일본정부는 최근

* 본 글은 10월 21일, 동경집회에서 강연한 원고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개인배상할 수 없고, 대신에 민간보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런 일은 민간업자가 한 일이지 국가와 군은 관계없다고 발뺌하던 미야자와 자민당 정권때나 지금 사회당 정권이나 기본적인 태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개해 오던 것 외에 정대협의 또 하나의 운동으로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국제법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판결받자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PCA에 제소하게 된 동기 및 과정

1) PCA 제소 결정동기

우선, 할머니들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뭔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하나의 context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3년부터 94년 현재까지 만 1년 반동안 6명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계신 할머니들도 병약하신 상태로 하루 하루 목숨을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군위안부 생활로 인한 고통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머니들은 일본정부로부터 정당한 법적 배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주는 위로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완전한 진상의 조사와 이에 따른 국회결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국내법 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성이 희박하다는 것과, 그 가능성이 없는 판결이 나오기 까지도 아주 오랜 시간이 소비될 것이라는 판단을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9명이 다른 한국의 태평양전쟁희생자들 및 그 유가족들과 함께 동경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우리는 판결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년이상을 끌다가 결국에 패소판정을 내렸던 대만전쟁피해자들의 예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제법상 명백한 인도에 반한죄이며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 하에서 판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정부의 민간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지 및 협조의사가 우리를 PCA에 제소하게 하는 한 동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동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물질적 보상포기 발언이 미친 악영향은 매우 커습니다. 일본정부는 실제로 개인배상할 수 없다는 근거로 한국정부의 물질적 보상요구 포기발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국정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가간의 보상은 요구하지 않지만, 민간차원의 배상청구소송 및 운동은 지원하고 협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무부에서 정대협에 보내준 공문과 이우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서에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PCA를 결정하여야만 한 상황을 우리는 그렇게 썩 유쾌한 기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PCA로 가자고 하기 이전에 벌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울산에 살고있는 윤두리 할머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분은 부산 영도에서 길을 가다가 경찰에게 잡혀 영도위안소에서 위안부로 있었는데, 도망가다가 잡혀서 군인의 총뿌리에 엉덩이 위 응치뼈부분을 찔려 아직까지도 다리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배상해라. 배상해라고 해야돼나? 일본이 잘못했으니 잘못한 자기들이 알아서 사죄하고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가? 피해자들이 배상하라고 소리질러야 되는 것이 이게 될 말이가? 제발 피해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이상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일본은 피해자와 피해국 국민들이 배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PCA에 가자고 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피해국에 공식사죄 및 법적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성을 전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개인배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범죄성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유

엔 인권위원회 활동, 아시아 연대활동,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가입반대운동 등의 국제여론화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에 더욱 더 힘을 가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개인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PCA에서 판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PCA제소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중 알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건너와서 회의하기를 몇차례, 또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회의하기를 몇차례, 그리고 정대협 내부에서 수십여차례 회의를 거치고, 국제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유엔 등 국제여론에 대한 상황판단, 일본정부의 태도감지..., 그리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시작된 PCA 논의가 8월 말에 가서야 그 결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2) PCA 제소 목적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PCA에 제소하게 된 국제법적 근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심각한 인권침해범죄이며 전쟁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군수뇌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여 13-18세의 어린 소녀 10만-20만을 강제연행하여 군인들의 성노예로 만든 일은 명백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임이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범죄와 관련하여 여러결정을 하였는데, 금년 5월,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에서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정대협과 함께 PCA에 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8월의 인권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중에 행해진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해 접수한 정보를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낼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행위가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졌던 전범재판소 곳곳에서 민간인 부녀자에 대한 강간행위에 대한 처벌의 선례들이 명확히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네덜란드 부녀자들을 위안부로 하여 강제매음케 한 범죄행위로 일본군 책임자들이 바트비아 전범재판소에서 처벌받은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비인도적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범죄행위와 이에 대한 책임을 세계에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PCA에 가져가는 첫째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할머니들의 명예 및 인권회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민간위로금 지급안은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일본정부의 범죄행위에 의한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당연히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PCA에서 일본정부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를 판결받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고 있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이 밝혀져 그 범죄성이 드러나고, 그 가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지에서 혹은 귀향길에 사망하거나 혹은 자살하거나 실종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유골은 어디에서 뒹굴고 있는지 그 후손도 모릅니다. 역사기록도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짓밟힌 인권을 되찾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기록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에 의해 가해자들의 범죄가 드러나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다면, 그래서 국제적으로 기록을 남긴다면 그것이 곧 그 분들의 명예 회복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단순한 돈에 불과한 동정금을 던져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대협은 PCA에서 일본정부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2차 보고서에서 소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는데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정부 스스로 일본정부가 1925년에 가입한 '추업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어겼음을 인정한 것이며 동시에 1930년 6월에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채택되고 1932년 일본정부가 비준한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조약' 역시 어겼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PCA로 가서 일본정부가 비준한 국제조약을 어겼을 경우에 겨야하는 법적책임 또한 확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PCA운동을 또 하나의 국제캠페인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가 불응하면 불응하는대로 또한 응하면 응하는대로 일본정부가 최소한의 국제법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정치지도국이 되고자 하고 있음을 우리는 비난하고 국제여론화 하여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3. 현재 활동

우리의 현재 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일본정부가 PCA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정부의 지지 및 협조를 얻기 위해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운 것은 국내지지기반이 약하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여론을 모으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한국정부에 대한 로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8일, 한국정부의 정신대실무대책반장인 유병우 아태국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에서 우리는 PCA 제소결정과 그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정부 차원에서 PCA에 대해 지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포괄적인 협조는 못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PCA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 한국정부를 초청하면 참석하여 발언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변호사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민변에서는 국제인권분야 담당변호사들을 중심으로 PCA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대한변협에서는 앞으로 PCA에 적극 가담하기로 하고, 우선 변호인단 수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한국정부에 질의서를 보내는데 있어서 그 내용 중 일본정부가 PCA에 응하도록 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째, 국내여론화 활동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PCA에 대한 지식도 열악하거나 '일본정부가 과연 응하겠습니까?'라는 질문뒤에 스스로 더 이상의 관심을 갖기를 포기하는 대중을 우리는 만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본정부가 응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넣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나가며, 매주 수요정기시위에서의 홍보 등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운동을 위해 지방까지 참여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고, 각 지방대학교 여학생조직, 교회등을 중심으로 조직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지방조직이 완성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서명운동 전개와 아울러 소규모 강연회 및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7-29일의 한·일 변호인단, 민간단체 심포지움을 서울에서 가짐으로써 PCA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 우리는 PCA제소에 일본정부가 응하게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및 법적 배상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여론을 더욱 더 활성화 하여 일본정부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정부가 국제무대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여론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전쟁중에 가해진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린다 채베즈씨의 조사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쿠마라 스와미씨의 조사,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문제 특별보고관인 조아네시와 귀쎄씨의 조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최대한 우리문제를 여론화 해내는데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끊임없이 국제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여러 사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1-2월 중에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정부에게 아시아연대의 힘을 표출하고, 압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추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연대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민족주의가 갖는 민족, 국가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여성들의 연대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계할 것은 정치적, 경제적으

로 실질적 힘을 갖지 못한 여성운동은 구체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는 단지 도덕적 지원이나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정치영역, 경제부문에 대한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이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세계평화를 의논하는 국제적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시아 여성들에게 행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국제적 서명운동이나 여론조성운동을 대규모로 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힘을 증명해 낼 수 있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과 각국의 정부가 국가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일본의 강비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판단아래 현재 정대협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 초까지 수거하여 12월 이내에 각 유엔가입국 외무성과 유엔에 보낼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계획으로 우리는 내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95년 8월 30-9월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4차 세계여성 대회와 NGO포럼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대회에서 개최되었던 「여성인권에 과난 국제재판」과 비슷한 규모와 내용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외에 아시아국가, 또는 보스니아 여성들과 연대하여 「전쟁중의 성노예에 관한 여성포럼」 등을 며칠에 걸쳐 개최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제여론은 한·일 양국의 국내여론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PCA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국내의 여론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 드리는 것은 일본내에서 큰 여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저명인사들의 지지와 동참을 얻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받은 분의 지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할머니들은 시간이 갈수록 병약해져 가고 있고, 일본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PCA에 응하게 하는 역할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일본정부가 결정적인 것을 발표하기 이전에 성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국제활동과 한 국정부에 대한 로비 등 20개 회원단체와 그 외 20여개의 협력단체들의 조직력과 동력을 모아 압력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후 50주년에는 정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이 규명되고, 사죄 및 법적 배상이 이루어져 할머니들과 우리들 활동가들이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젠프 사건

당사국 미국 및 멕시코
재판소 미국 멕시코 일반청구위원회
판결일 1926년 11월 16일

[사건개요]

1918년 7월 10일경, 멕시코의 광산에서 미국인이 멕시코인으로부터 살해당했지만 멕시코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살인범을 놓쳤다. 미국정부는 피해자 유족을 대신하여 멕시코 당국이 범인을 체포도 안하고 처벌도 안한 것에 대해 멕시코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일반청구위원회에 호소했다. 재판소는 살인이라고 하는 개인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백히 합고 동시에 이것과는 별개로 범인의 불체포·불처벌에 대한 국가의 독자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멕시코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사실]

1918년 7월 10일경 멕시코의 광산에서 ** 광산회사의 광산 감독관이었던 미국인인 젠프가 동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멕시코인에게 고의로 사살당했다. (생략) 수사대는 범인을 체포할 수 없었다. 미국은 멕시코 당국이 즉시 행동을 취하면 범인을 체포,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계울렸다고 판단, 젠프의 유족을 대신하여 2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결국 8년이 지나고, 본 재판소에 출소시에 있어서도 범인의 행방은 알 수 없고 범인의 체포, 처벌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판결]

본 건은 '멕시코 정부가 젠프의 살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는 '멕시코 정부가 살인 행위를 어떤 형태로 묵인하는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이 아니다. 본 건에서의 국제의무 위반은 국가의 독자적 행위에 기초하며, 범인이 범한 위법행위와는 별개의 것이다. 범인은 미국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고, 정부는 범인을 소추하고 적절하게 처벌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에 책임이 있다. 범인은 자국의 형법을 위반했으며 국가는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법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범인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그 유죄 또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 형사 또는 민사의 책임을 문책당하지 않지만 정부는 사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국제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범인에 의해 생긴 손해는 젠프의 죽음때문에 젠프의 유족에게 생긴 손해이다. 정부의 태만에 의해 생겨난 손해는 범인의 불처벌에 기인하는 손해이다. 혹시 멕시코 정부가 의무위반을 범하지 않고 범인을 체포하여 처벌했다면 젠프의 유족은 정부의 태만에 분개하지도 않았으며 또 범인에 대해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었다. 비록 불처벌이 어떤 의미에서 시인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를 시인하는 것이 그 범죄의 공범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비록 범인의 불처벌이 실제로 범인에 대해 가담한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파생적이고 간접적인 책임을 정부 자신이 살인을 범했던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생략) 본 건처럼, '정부가 재판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이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살인에 기인하는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국가가 범인의 체포와 처벌을 했다면 유족은 그러한 배상을 얻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재판거부는 廣義에 있어서 행정부 및 입법부의 행위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타입처럼 부적절한 정부의 행위의 경우에는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직위 또는 부직위에 의해서 생긴 손해 이외에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은 없다. 狹義에 있어서의 재판거부의 경우도, 정부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

은 자신의 작위·부작위에 대해서이다. 본 건과 같은 타입의 재판거부의 경우에만 국가는 자기자신의 작위·부작위가 아니라 개인이 행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이러한 예외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지만 당재판소가 아는 한, 그러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 세가지 이유에 의해 18세기 말 이래의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 1) 개인의 의무위반에 수반하여 국제의무 위반이 인식되어져 왔다는 것. 2) 재판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이 국제재판소에 의해 많은 다른 형식에 의한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 3) 일방의 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대해 행해지는 과대한 요구가 중재재판에서 거듭된 결과 완화되어 왔다는 것.

그러나 옛날 이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정부기관에 의한 불처벌의 경우에는 정부가 범죄자체에 책임이 없다고 해서 정부는 청구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정부에 대해 징벌적 방법으로 책임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은 틀렸다. 물질적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자에는 정부의 중대한 의무태만에 대해 항상 충분한 배상이 주어져 왔다. 이러한 세계적 규모의 국제관행은 미국과 멕시코가 1923년 9월 8일에 체결한 협정의 제 1조가 협의의 물질적 손해의 배상뿐만 아니라 모욕과 비탄 등의 종류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한 폭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재판소는 피해자의 유족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명백히 그 의무를 계을렀다는 사실에 의해 생긴 부가적인 고통을 경시하지 않는다.

모든 요인을 고려한 결과, 본 재판소는 1만 2천 달러가 젠즈의 살인자의 불체포 및 불처벌에 기인해서 청구자에게 생긴 개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으로서 과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해서 본 재판소는 멕시코 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해 1만 2천 달러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다.

연립여당내 전후 50주년문제 프로젝트 위원회의 민간위로기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 은 희(정대협 PCA준비위원장)

우리는 지난 12월 7일 발표된 여당내 전후50주년문제 프로젝트위원회내 「종군위안부 문제 등 소위원회」의 「소위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중간보고」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동시에 일본은 영원히 「부유한 후진국」으로 남을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1990년 11월 정대협운동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진상규명, 사죄,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대사관 앞의 시위는 147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신고한 생존할머니들이 200여 명에 이르고 이 할머니들의 피맺힌 증언과 호소가 이제 적어도 200번은 넘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들중 지난 1년동안에 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시아 피해국의 여성연대집회가 계속되고 UN인권소위원회에서는 개최시마다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파악을 위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이 역사에 없는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책임추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국제법률가협회(ICJ)에서 일본정부가 범죄행위에 대한 전적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함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본태도에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간위로기금은」에도 이 기본태도는 그대로 관철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12월 17일, 일본 PCA연락회 주최로,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PCA 집회에서의 강연원고입니다.

「민간위로기금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일본정부가 위안부정책을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안에는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 지배,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운나쁘게 등장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요령껏 회피하고 적당히 쌉값으로 무마시킬 것인가 하는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안에는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위안부정책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누가 책임자인가? 누가 피해자인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금안이 가진 두번째 문제는 이 안은 국제적 권고와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재산청구권에 관한 협정으로 형사적 범죄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ICJ보고서에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ICJ 보고서에는 "1965년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문맥으로 보아서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한일조약의 청구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정부는 전 '위안부'에 대해 명백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정대협이 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답변에서 65년 한일협정에 책임자 처벌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음(문서번호 아일 12000-475)과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 등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아일 22220-422). 그리고 PCA중재소송에 대한 지원약속도 했습니다(12000-475).

이 모든 것을 이 기금안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후책임이행 방식과 내용에서도 이 기금안은 국제적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일단 자국의 군사관련 업무에 동원되었다가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피해당시 혹은 현재의 국적 또는 주소지를 불문하고 동원주체국의 원호책임을 집니다. 단지 일본만이 예외적으로 자국민에게만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컨데 독

일의 경우 보상금 누적액의 80%가 해외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본의 경우, 자국내 전쟁희생자 구호비용의 누적 합계는 1990년도에 30조 9000만엔, 년간 1조 9천억 엔을 지불하고 있는 반면 대외전후책임 부담액은 누적합계 1조엔에도 못미칩니다.

제도적으로 금액상으로 일본은 전후 대외책임이행 특히, 희생자 개인배상은 거의 무시함으로써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안의 세번째 문제는 일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일본국민에게는 국가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요구를 위로금 요구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일본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피해할머니들을 살기 힘들어서 생활비 보조를 요청하는 집단으로 선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일본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정책의 범죄성은 잊어버린채 피해 할머니들이나 정대협의 운동을 일본이 잘 살게 되니까 65년에 다 끝난 일을 다시 들춰내어서 돈을 더 받으려는 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인정과 사죄,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배상입니다. 그런데 '위로금안'은 이것을 돈문제로 환원시킴으로서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다시 한번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정부는 일본군 성노예문제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비판되고 책임추궁되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그리고 정치가들에게 조차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 자료와 정보를 차단한채 국민을 우증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패전 50주년을 맞아 원폭피해 상황을 강조하고 전몰자 기념관을 세우고 하는 운동을 통해 일본이 신군국주의로 가는 길을 확실히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브로씨가 수상식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위험스럽고 기괴한 나라'로 만드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속에서 이 위로기금안은 국민참여의 길을 열어 놓는다는 미명하에 국가가 져야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 개개인이 사죄의 마음으로 기금을 모으는데 기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배상의 주체와 배상의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책임은 국민에게 분산·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체가 되어 위로금이 아니라 명예회복과 역사교육 등이 포함되는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민간 '위로금' 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적한대로 위로금은 발상의 근거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이 민간위로금을 용납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14살에 끌려가서 머리를 찔리우고 강간당하고 죽음보다 괴로운 생활을 하면서 내 청춘은 다 빼앗겼습니다. 결혼한번 못해보고 밤이면 밤마다 군인들이 달려드는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며 공포에 떡니다. 지금은 친구들도 한 방에서 같이 잠자리를 꺼릴만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불쌍하다고 던져주는 위로금을 받겠습니까? 나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잘못으로 내 인생이 전부 망쳐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싶습니다. 돈은 필요없습니다. 사죄는 꼭 받아야 눈을 감겠습니다."

하루에 수십명의 군인을 상대하며 그 더러워진 사쿠를 직접 씻는 생활을 했던 할머니들, 그래서 아직도 우유를 보면 정액이 생각나서 우유를 못먹는 할머니, 14살에 국부를 절제당한 그대로 강간을 당하고, 지금도 남의 땅 중국 무한에 버려진채 죽음을 기다리는 할머니들, 이 할머니들이 불쌍하다고 던져주는 위로금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일본군 성노예문제는 끝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전후책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년이 지난 지금 각국에서, 국제적으로 일본의 전후책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본이 진정으로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대한 사죄와 반성과 법적 책임을 이해하지 않는한 이 문제는 언제라도 다시 부상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주장하는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

제가 65년에 모두 끝났다고 확신한다면 당당히 국제중재재판소(PCA)에 가서 국제적 판단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PCA에 가서 중재를 받자는 문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것은 한 국가로서 당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일 변호인 100명이 함께 노력하고 있고, 피해할머니들도 주장하고 있는 국제중재재판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국제법에 근거한 판단을 받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젊은 세대와 양심적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일본, 경제성장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역할을 하는 일본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군국주의 일본의 멍에를 벗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고, 책임자처벌을 논의조차 못하는 맹목적 애국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독일은 나치전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위하여.

우리가 만났던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의 관료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평계를 냅니다. 그러면 일본은 관료들만의 국가입니까?

이제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일본을, 새로운 한국을, 그리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노력합시다.

유엔에서 여성인권운동으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윤 미 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I. 정대협 활동의 시작

1970-80년대의 국내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운동단체들은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분단으로 인해 민족수난사 속에서 고통당한 여성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외화획득의 명분 하에 정부에 의해 조장되었던 관광산업정책으로 인해 자행되는 한국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에 직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여성운동의 한 과제로 삼게 되었다.

처음에 국내에서 정신대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8년 4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의 "여성과 관광문화"라는 국제세미나에서였다. 그 후 시기적절하게 시위를 한다던가, 설명서 발표, 한일양국에 서한발송 등의 활동으로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응해 오다가 1990년 11월 16일에 연대하여 오던 18개 여성단체가 정대협을 발족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운동은 급속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II. 민족문제, 여성문제에서 인권운동으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대협의 활동이 시작된지 오는 11월 16일로 만 4년이 된다. 아시아지역에서

* 지난 94.11.20,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실무자교육에서 발표된 원고.

운동조직이 다른 나라 여성들, 특히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거의 유일하게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10만-20만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의 80-90% 이상이 조선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여성의 문제, 민족문제로 제기된 이 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은 아시아피해국과의 연대운동과정에서 그리고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인권운동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구체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이며 전쟁범죄라는 인권개념으로 나아가게 된 것도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부터이다.

III.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 가지고 갔나?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했더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정신대문제를 일본정부 스스로에게 맡길수가 없었다.

1990년 6월 일본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의 모또오카 쇼지의원이 "강제 연행된 종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노동성관리가 "종군위안부는 정부가 한 일이 아니었고,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에 대해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항의하고 서한을 보냈지만 일본정부측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단지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국회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과의 발언을 했을 뿐이었다. 이렇게 일본정부와의 대결에서 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대협은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찾아 1992년 초에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IV. 유엔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1. 처음으로 제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직접 유엔에 정신대문제를 제기한 것은 1992년 2월이었다. 처음에는 유엔의 어느 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효재 공동대표가 미국의 유엔 본부를 방문하여 여성문제, 인권문제담당자들과 접촉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신대문제의 개요에 대한 설명문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그 시작이었다. 유엔본부에서 이대표가 접촉한 여성 문제 담당자가 여성지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에게로부터 인권위원회에 제기 하라는 조언을 들었고,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가 귀국한 이후 정대협은 곧바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진 세계 NGO단체 대표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개요에 대한 설명문과 함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언 및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편지는 실제로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였고, 몇개의 여성운동단체에서 편지와 함께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대협의 유엔활동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대협에서 직접 유엔에 정신대문제를 제기하기 바로 이전에 이 문제가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되어 있었다. 정신대문제를 알게되었던 일본인 변호사 도츠카 에쓰로가 1992년 2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그 후 5월에 열린 인권소위원회 산하의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에도 참석하여 정신대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해 놓았던 상태였다.

2. 본격적인 유엔활동

1) 이런 기반위에서 정대협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의 지원을 얻어 1992년 8월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가하게 되었다. 첫 회의에는 이효재 대표,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 정진성 조사연구위원장, 황금주 정신대할머니 이렇게 4명이 참석하여 소위원회에서 2회 공식발언하고, 유엔주재 언론과의 회견, 민간단체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NGO브리핑에서 정신대할머니의 증언과 함께 정대협의 운동과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설명회에는 조총련 단체인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대표들이 같이 참석하여 강제연행에 관한 사실들을 폭로하였다.

이때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일본군의 정신대가 된 아시아 - 주로 한국- 의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중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의 피해자를 위한 원상회복, 배상 및 재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반 보벤)'에게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 후 정대협은 같은해 12월 11-13일에 유엔인권소위원회 배상문제 특별보고관인 반보벤 교수와 도츠카 에쓰로 변호사를 한국에 초청하여 "국제인권협약과 정신대문제"라는 세미나를 개최하므로 정신대문제를 국제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었다.

이후 정대협은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마다 참석하여 정신대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 1993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2) 1993년 3월 방콕의 세계인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준비 회의에 이효재, 정진성씨가 참석하여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서명을 받는 등 정신대문제를 알려나갔다.

3) 1993년 5월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는 전쟁중의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강제노동, 즉 2차 대전중 일본에 의한 정신대와 강제노동자로 일했던 남녀의 상황에 대해 그 정보를 인권소위와 배상문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4) 그리고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이효재, 신혜수, 정진성, 김복동, 윤미향 참석이 참석하였는데, 이 대회를 준비하고, 참석하는 가운데 정대협은 아시아여성인권단체와의 연대와 세계여성인권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으로 정신대운동을 여성인권운동으로써 한국과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세계의 여성들과 연대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회의의 결의문 채택에 있어서도 일본정부가 정신대문제와 관련한 항목에서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집단강간, 성노예... 현재 진행중인 폭력'으로 통과시키고자 로비하였지만 결국은 현재를 모든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통과되어 '...집단강간, 성노예.. 이

러한 모든 폭력'으로 통과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지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5) 1993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하여 일본군 '위안부' 특별보고관 임명건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마침 보스니아 집단 강간사태와 맞물려 국제적인 호응을 얻게되었다. 이 회의에서 정신대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내전을 포함하여 전쟁중에 가해지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등의 상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담당할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유엔인권소위는 특별보고관에 린다 채베즈를 임명하였다. 특별보고관에게 주어진 중요임무 중의 하나는 제 2차 세계대전중의 일본에 의한 성노예에 관해 관련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함께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제시하는 일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정부가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 유엔은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할 수 없으며 모든 배상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아시아피해국들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6) 1994년 3월 4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 원상회복. 배상. 보상권"에 관한 결의안 및 "인권침해 행위자의 불처벌문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의 유엔인권소위원회 결의사항인 특별보고관 임명에 대한 승인건에 있어서 미국이 자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인권소위원회의 조사내용이 너무많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하자 승인을 연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임명건이 통과되어 스리랑카의 쿠마라스와미가 임명되어 1차 보고서(총체적 보고서)를 95년 2월, 2차 보고서는 96년 2월, 3차 보고서는 97년 2월에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 계획에 의하면 1차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한 분야로 보고할 예정이고, 3차 보고서의 국가에 의한 폭력 항목에서 역시 일본군 '위안부'를 다룰 계획이다. 현재 정대협은 3차 보고서를 2차 보고서인 가정내 폭력문제와 순서를 바꾸어 보고할 수 있도록 설

득할 예정이다.

7) 그리고 5월의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는 "일본정부는 정대협과 함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는 결의를 하였고, 6월의 자카르타 각료회의에서는 일본의 갖은 방법을 동원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정부는 전쟁중에 체계적인 강간을 비난하고 처벌을 요구했을 때 응해야 한다."이다.

8) 금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는 특별보고관인 린다 채베즈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함이 없이 제 47차 인권소위에 전쟁중의 노예제에 대한 Working Paper를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부, 정부간 기구, 민간단체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금년 8월의 유엔인권소위는 "전쟁중에 행해진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해 접수한 정보를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낼 것을 결정하고, 특별보고관들이 실무자들이 제 49차 회기중에 접수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함"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현재, 남북한 정부는 린다 채베즈를 공식초청하여 내년 3월중에 남북한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V. 성과

1992년부터 정대협이 국제적 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이룩한 몇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은 무엇보다도 군국주의하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희생당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군국주의, 전쟁, 가부장제, 집단강간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촉발시켰다. 많은 석사, 박사논문이 작성중에 있으며, 전쟁과 강간 등의 제목으로 국제세미나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운동은 평화운동과도 연결되었다.

둘째로 여성인권운동이 목표한대로 유엔 등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단체로 하여

금 여성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고취시키고 인권의 개념을 넓히는 성과를 낳았다. 전쟁중에 여성이 겪게 되는 집단강간, 성노예의 문제를 심각한 여성인권 문제로 인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 그리고 자카르타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등 유엔의 공식문서에 이를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사되고, 이 조사내용은 세종류의 보고서에 기록될 것이다.

VI. 앞으로 남아 있는 일

1) 북경여성대회

95년 8월 30-9월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4차 세계여성대회와 NGO 포럼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세계인권대회에서 개최되었던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재판」과 비슷한 규모와 내용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외에 아시아국가, 또는 보스니아의 여성들과 연대하여 「전쟁중의 성노예에 관한 여성 포럼」 등을 며칠에 걸쳐 개최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 아시아연대회의

우리는 이 문제는 내년 전후 50주년이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은 힘을 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년동안 온갖 조직력과 로비력을 동원하여 매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내년 초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및 피해국 민간단체의 소리를 모으고,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할 예정입니다.

2)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연대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민족주의가 갖는 민족, 국가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여성들의 연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실질적 힘을 갖지 못한 여성운동은 구체적 해결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큰 힘이 없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적 연대는 단지 도덕적 지원이나 세계 각곳에서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남성들의 무대인 정치영역, 경제부문에 대한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이는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건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세계평화를 의논하는 국제적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시아여성들에게 행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적 서명운동이나 일본상품불매운동, 여론조성운동을 대규모로 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힘을 증명해 낼 수 있다면, 각국의 정부가 국가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일본의 가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에 일정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판단아래 현재 정대협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운동은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 초까지 수거하여 12월 이내에 각 유엔가입국 외무성과 유엔에 보낼 계획이다.

3)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정대협이 유엔기구와 별도로 국제사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곳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이다. 이 재판소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 국가가 응해야 PCA에 간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자 한다. 일본정부가 불응하면 불응하는대로 그것을 또한 이용하여 일본이 배상할 수 없다는 발표와 함께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국제법의 재판을 기피하는 뭔가 뜻뜻하지 못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국제캠페인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정신대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PCA를 성공시키기 위한 연락회를 조직하여 활동중에 있고, 일본변호인들 20여명과, 한국에 10여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준비중에 있다. 지난 9월 15일에는 제소하기로 결정한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대협, 그리고 한국변호인단 대표로 배금자 변호사가 함께 방일하여 일본민간단체들과 변호인단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PCA를

성공시키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오는 11월 27-9일까지는 서울에서 한·일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들의 PCA심포지움이 있을 계획이다.

VII.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의 운동이 운동초기의 민족문제, 여성문제라는 종체적 인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인도에 반한죄' 또는 '전쟁범죄'라는 인권에 대한 개념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상의 용어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의 개념을 이용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반적인 여성문제의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인권유린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전쟁과 강간' 또는 '전쟁중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한국과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세계의 여성들과 연대하게 되는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연대운동이 일본정부에 치명적인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광복 50주년인 내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국회결의 사죄, 국제법적 배상, 책임자처벌 등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여러 국내인권 단체들의 연대를 부탁드린다.